

## 2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었으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

### 1. 사건개요

- 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.077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운전함
- 2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

### 2. 변론요지

-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, 혈중알코올 농도, 음주운전 거리, 직업상 운전면허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변호하며 선처를 탄원
-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2년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

#### <행정처분 관련 규정>

##### 도로교통법 제82조(운전면허의 결격사유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「소년법」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.

6.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)부터 2년

가.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(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)한 경우

### 3. 처리결과

- 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두변론하여 검찰에서 최소한의 벌금형의 처분으로 감경받고, 법원에서도 적극 변론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

판 결 선 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23. 10. 6.

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

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